

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
구성·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·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4월 9일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의 설립근거 및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협의회는 시책사업 발굴협의, 조사·연구사업에 대한 협의 등 포럼은 지역발전 방안 주제발굴, 지역현안 대안 제시 등(안 제2조)
-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, 포럼은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(안 제3조)
- 협의회위원 및 포럼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남·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포럼의 기능을 규정하였고
 -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에 대해 규정을 하였음.
 -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와 포럼의 위원 임기,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의 설립근거 및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- 다만, 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협의회나 남·북부권 발전포럼의 경우 조례안에 규정한 대로 해석을 하면 1개의 협의회나 포럼을 구성하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어 구성되는 협의회 및 포럼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. 또한 조례는 도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포하므로 충청북도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지역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붙임: 충청북도 남·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·운영 조례안. 끝.